

사인확인제도와 관련한 사망증명서 및 압수영장에 대한 고찰

김윤신¹ · 김태은²

¹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²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A Study on the Death Certificates and the Warrant of Seizure in Relation to the Death Certification System

Youn Shin Kim¹, Tae Eun Kim²

¹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su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Gwangju, Korea,

²Department of Law, Chosun University College of Law, Gwangju, Korea

The death certification system in a modern welfare state is of critical importance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national statistics for health policy,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o, the monitoring of death events by the government has become an important function of a constitutional state. There are two ways in which a death certificate can be issued: the medical judgment by the physician via the death certificate and through a warrant for an autopsy by a law enforcement agency, especially in the case of violent deaths. On a practical level, however, the death certificate issued by a physician may contain serious faults like an inaccurate assessment of the cause of death especially when the death resulted from unnatural causes. The warrant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legally fulfilling its original mandate, especially when looking at procedures in the case of suicide or other causes of death that are not related to a crime. The authors, therefore, examined the shortcomings of legal codes related to death certification and warrants for autopsies and propose the reformation of legal codes for the death certification system.

Key Words: Death certificates; Warrant; Cause of death; Manner of death; Autopsy

Received: January 30, 2020
Revised: February 18, 2020
Accepted: February 25, 2020

Correspondence to

Youn Shin Kim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su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309 Pilmun-daero, Dong-
gu, Gwangju 61452, Korea

Tel: +82-62-230-6998

Fax: +82-62-234-4584

E-mail: ysk007fm@hotmail.com

서 론

국민의 죽음에 대한 국가적 감시는 필연적으로 적절한 사인 규명과 그를 위한 제도를 필요로 하고, 이는 현대 복지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다.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담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를 통한 적절한 사인규명이 곤란하거나, 범죄로 인한 사망 혹은 타인

의 행위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의심되는 죽음에는 사법기관이 개입하여 부검 등의 강제처분을 통해 사인규명을 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므로 법관이 발급한 영장을 요한다.

사인이란 사망을 초래하였거나 혹은 기여한 모든 질병, 병적 상태, 혹은 손상, 그리고 그러한 손상을 야기한 사고나 폭력의 정황이라고 정의된다[1]. 개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공적 규명이 국가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범죄와의 관

련성 여부를 넘어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사망에서의 원인 및 책임소재의 규명, 감염병으로부터의 사회안전의 확보 및 일반 대중의 보호, 신원불상자의 사망에 대한 행정적 처리 등 다양하고도 민감하다. 이러한 사인규명의 과정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두 문서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라는 의료문서와 강제처분으로서의 부검에 대한 적법성 확보를 위한 영장이다. 부검을 위한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 검증영장 등의 명칭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영장집행의 핵심은 압수행위에 있고, 내용적으로는 검증행위에 있는 듯하다.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부검은 법적으로는 검증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제222조)에 따라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므로, 모든 변사가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검사가 이루어지며, 그 중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부검을 시행하는 “사법검시위주제도”를 택하고 있다[2]. 형사소송법(제215조)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형벌권의 실현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국가적 요청이라 할 것이나, 강제처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부검을 위한 영장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법제도는, 현실 속의 검시실무와 심각한 괴리를 보임으로써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영장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망은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의 영장의 청구, 발급, 집행이 과연 헌법이 정하는 근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가의 사인확인제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의 작성과 발급과정, 그 기재내용의 정확성, 그리고 부검을 위한 영장의 형식적 내용과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두 문서 모두 중대한 허점을 안고 있거나 혹은 절차적 합법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형편임에도 우리 사회는 그 허점이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는커녕 실태 파악마저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검시에 관한 많은 입법 시도들이 실없이 무산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인확인제도와 관련된 두 핵심 문서, 즉 의료문서로서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와 사인규명을 위한 강제처분으로서의 부검을 위한 영장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들이 우리나라의 사인확인제도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고

자 한다.

본 론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실태 검토

사망진단서란 진료 중이던 환자의 사망에 있어서, 진료 담당 의사가 죽음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담은 의료문서이다. 거기에는 사인뿐 아니라, 직접사인과 원사인 등 그들 간의 인과관계, 발병과 사망의 시점 및 시간경과, 사망의 상황에 대한 정보(사망의 종류, manner of death, MOD)까지도 담겨 된다. 이와 달리 시체검안서는 병원 도착시 사망, 진료한 바가 없던 환자의 사망, 진료한 바가 있더라도 사망의 경과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등, 좀 더 복잡한 업무를 수반하게 되는데,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 두 문서를 하나의 법정양식(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이름만 바꿔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교부 목적은, 우선 한 개인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일이며, 사망원인에 대한 공적 기록을 통해 국가 통계자료의 기초를 얻고자 함이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진단한 사망이라는 사실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통해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되고, 그 결과 한 개인의 사망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그 개인의 법적, 사회적 의무와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장례절차로서의 매장이나 화장을 위해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며, 상속, 보험 등의 처리에도 의사의 ‘사망진단’이 필수적이다.

의료법 제17조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간단한 의사(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죽음에 관한 증명문서를 발급할 권한을 주고 있고, 검안서에 한하여는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예외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허점이 발견된다.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소속의 법의학 전공 교수는 그가 소속한 의과대학의 기초의학교실이 현행법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업에의 종사를 인정받지 못하여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발급의 자격에서 배제되고 만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에는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퇴원 연월일 등 구체

적인 기재사항을 적시하고 있는 반면, 제10조(사망진단서 등)에서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망진단서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3]. 이러한 법규정의 흠결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기재 내용의 부실로 이어져 많은 연구에 있어서 이들 문서의 허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4-6]. 사망진단서의 주요 목적이 국가의 보건통계를 수집하고자 함이라면, 이 문서에 담기는 내용은 적어도 한 국가 안에서는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법규정이 필요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현행 법제도 하에서의 우리의 사망증명서는 그 기재사항의 충실도는 물론, 기재내용의 의학적 정확도에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검안서의 경우가 더 심각하여, 사망 후 병원에 도착한 환자에 대하여 의사는 보호자의 진술과 시체의 상태, 환자의 병력 등을 종합하여 사인을 유추하려고 시도하지만, 동행한 보호자가 환자의 병력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사망 후 긴 시간이 지나서 내원하는 경우도 많으며, 심하게 부패된 경우도 있어, 사망진단서와 비교할 때 시체검안서의 사인 정보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정확성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7].

사인에 관한 의학적 판단의 정확성도 문제지만, MOD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실제 MOD는 의학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MOD 판단의 일치율에 관한 외국의 한 연구에서, 사망에 관한 23건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부터 회신받은 응답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는 경우는 4건, 70%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는 경우는 12건에 그쳤다고 한다[8]. 심지어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자살과 타살의 판단은 의사의 몫이 아니므로 이를 외인사의 MOD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7].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우리 의료법은 사망진단과 시체검안이라는 매우 다른 성격의 업무를 같은 한 장의 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한 설명을 제공함이 없이 별지 서식만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2. '부검과 영장'의 실태 검토

영장주의란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사상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사법기관의 강제처분에 법관의 통제를 거치게 하는 헌법상의 규정이다. 영장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에 대한 명령장의 성질을 갖는 것과 허가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허가장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본다[9]. 이러한 영장주의에 따라서, 부검을 통한 사인규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장을 요하게 된다. 부검 행위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침습을 수반하는 것이고, 또한 유족의

정서적 거부감 등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강제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강제수사란 법률의 규정과 법원의 영장을 전제로 허용되는 수사방식이고, 그 중 압수·수색은 재산권, 주거권 등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게 되므로 헌법은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절차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10].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사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임의수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임의수사 원칙에 따르면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우선하여 수사대상자가 임의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1].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통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검을 위한 영장은 그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사인확인 과 관련해서 법리상, 실무상 흠결은 없는지,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죽음에 있어서 부검을 위한 영장은 적법한 것인가? 둘째,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고 부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죽음에서, 보험보상 등과 관련하여 유족이 사인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부검을 위한 영장은 불가피한 것인가? 셋째, 영장의 발급을 위해서는 죄명, 피의자 성명, 범죄의 내용, 압수의 대상, 검증의 장소 등이 적시되어야 하는데, 부검 전의 단계에서는 죄명도 피의자도, 심지어는 사망자의 신원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경우에는 영장의 형식적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넷째, 죽은 사람의 신체를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의 대상으로 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다섯째, 사인확인을 위해 발부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법적 문서로서의 형식적 내용과 운용실태에는 문제가 없는가? 등이다.

(1) 범죄혐의가 없는 죽음에서의 부검을 위한 영장의 적법성

사법절차상의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진대, 범죄와 관련한 사망이 아닌 경우에도 오직 영장을 통한 강제처분으로서의 부검만이 적법절차의 준수인 듯이 영장이 청구되고 발급되고 제시되는 지금의 현실은, 그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심각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범죄혐의가 합리적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영장을 통해 부검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범죄혐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이전 단계에서는 영장을 통한 강제처분으로서의 부검은 문제가 될 소

지가 크기 때문이다[12]. 사건에 따라서는 유족의 동의를 통한 임의수사가 가능할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강제처분만을 우선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대법원은 "... 자살과 같이 범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변사자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시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한다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판시하면서, 자연사, 외인사, 자살 등 죽음의 대상에 따라 검시의 종류가 구분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죽음에 대해서는 검시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만 실시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검시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검시인지 사법검시인지, 아니면 부검까지를 포함하는 검시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우리의 현행법에 있어서 죽음의 조사에 대한 제도나 규정이 얼마나 모호하고 부실한지를 드러내고 있다[13]. 즉, 대법원은 자살을 범죄로 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자살의 경우에도 부검을 위해서 영장이 청구되고 발급되고 있는 것이다. 사법검시위주제도의 우리나라에서 자살자에 대한 검시 또는 부검이 필요한 이유는 자살임을 명백히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자살의 배경에 타인의 책임이 개입되었을 소지가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도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만이 가능한지, 또 그것이 법리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사의 정의를 어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개념이 너무 모호한 것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14]. 대법원은 변사자를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말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331 판결) 바 있고,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어야 수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범죄혐의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사인규명만을 위한 압수, 수색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0]. 따라서 범죄혐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부검은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사법부검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때는 시체해부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행정부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논리에 부합된다[12].

(2) 가족의 요청에 의한 부검에서의 영장의 적법성

범죄혐의와 연관되지 않은 사망, 즉 산업재해나 직업병 등에 있어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부검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희석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검을 통한 사인규명의 필요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설명이나 요청에 대해 유족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강제수사에 대한 법원의 허가, 즉

영장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 유족이 부검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심지어는 유족이 부검을 요청하는 경우마저도 영장 없는 부검을 꺼리고, 꺼리는 정도를 넘어 마치 불법행위라도 되는 듯한 거부감을 드러냄을 목격한다.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위반은 취득한 물적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10]. 따라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영장을 통한 강제처분을 선호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할 것이나,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사망에 대한 부검은 불필요한 혹은 불법한 강제처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넘어, 부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본질을 흐리는 모순된 처분이 되고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사인의 규명, 즉 죽음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의 본질에서 벗어나,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준비, 이를 검찰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다시 유족과 부검의사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부검시간의 지체를 초래하여 시체의 변성 또는 부패를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부검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수사기관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적, 인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이는 본말이 전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장주의의 관한 헌법적 취지에서도 벗어나 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영장인지, 진정 누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장인지, 의구심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선행연구[15]에서 유족의 동의를 있거나 유족의 요청에 의한 부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음을 이미 지적한 바, 이러한 경우에는 동의에 의한 부검, 즉 임의수사가 먼저 시도되어야 한다.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압수라는 대물적 처분보다는 검증영장을 통한 부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3) 영장의 형식적 기재요건의 타당성

형사소송법 제114조(영장의 방식)에는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는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과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또는 신체, 검증할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포괄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며, 일반영장을 금지한다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충족시키고자 정해놓은 영장의 형식적 요건이라고 생각되나[15], 실무상 부검을 위한 영장에 기재되는 검증의 장소는 ‘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 아니라 ‘검증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촉탁기관(대학 법의학고실) 사이에 부검 장소가 유동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부검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장의 기재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영장의 본질적 요구사항을 간과한, 관행적 타성에 매몰된 잘못된 업무과약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영장의 문서양식(Appendix 1)을 보면 영장의 집행장소를 기재하는 칸이 별도로 있음에도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장소와 그 검증행위, 즉 부검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을 구별하지 못한, 관행에 젖은 태만이 드러나고 있다. 시체를 압수 및 검증의 대상으로 해석하면서, 부검실을 검증을 해야 할 장소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빚어지는 잘못된 강제처분의 관행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고 있다.

(4)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시체의 물건성

시체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대물적 강제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체’의 법률적 지위를 살펴야 한다. 민법(제98조)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및 신체의 일부는 당연히 물건이 아니고, 시체 또한 물건이 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체나 유골은 그 물건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수호와 봉사의 객체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특수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16]. 대법원도 시체에 대한 ‘특수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오직 매장과 제사 그리고 공양의 대상으로서 시체를 물건으로 인정하여, 분묘와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20. 2007다 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살펴본 바, 시체는 법률상 제한적 범위 내에서 물건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 강제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와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비추어, 시체를 마냥 물건으로 대하는 것이 현명한 처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국가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강제처분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압수’라는 대물적 처분은 지양하고, ‘검증’으로서의 강제처분으로 제도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부검은 검증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압수 처분을 수사기관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부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서적 거부감에 기원하고 있을 것이나, 현재는 그런 거부감도 상당부분 완화되고 있으므로, 유족의 동의를 통한 임의수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진정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라면 문서의 명칭 하나까지에도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리상 가능하다면, ‘부검영장’을 도입하여 대물적 강제처분을 지양하고, 사인불명의 죽음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검사가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형식적 내용과 운용실태의 문제점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의 필요성은 적법절차의 준수를 위한 헌법적 요청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영장이 죽음의 조사를 통한 사인의 규명, MOD 판단 등 법의학적 업무로 연계됨에 있어서는 심각한 모순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이나 의료법은 개념조차 정의되지 않는 ‘변사’라는 모호한 용어에만 매달린 채 죽음을 조사하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시의 권한은 검사가 갖고 있으면서, 실제 업무는 사법경찰관이 대행하며, 그 과정에서 판사에 의한 적법성 판단과 허가를 통해 의사가 부검을 하는 우리의 검시제도는 국민의 죽음에 대한 국가적 감시도, 적법절차의 준수를 통한 개인의 인권 보장도, 사인규명을 통한 국가 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자료의 수집도, 죽음을 조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업무효율성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문서양식(Appendix 1)을 보면, 영장번호, 죄명, 피의자 인적사항, 압수수색검증을 요하는 사유,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위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행일시와 집행장소, 처리자의 소속 등을 기재하는 칸이 담겨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 부검의 실질적 목적은 사인규명을 통한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 확인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 영장의 내용은 대단히 요식적이거나 심지어는 강제수사로서의 부검의 절차적 정당성 혹은 적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법관에 의해 영장에 적시된 기재내용 중,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는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자살, 신원불상자의 사망, 사인 불명의 사망에 대한 부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혹시 모를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청구하는 부검의 허가장이, 범죄사수의 필요성을 단정적으로

인정하고, 아직은 그 존재가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의심을 승인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성까지도 당연한 듯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예단이 담긴 공적 문서가 영장이라는 명칭을 달고, 경찰에 의해 작성되고, 검찰에 의해 청구되며, 법원에 의해 발부된 후, 부검을 위해 가족과 법의의사에게 제시되는 모습은 적어도 부검에 관한 한 우리의 법치논리가 얼마나 심각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찰

사인을 판단하고 죽음을 조사하거나 시체를 검사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다. 그것이 의료기관 내에서 임상 의사에 의한 업무일 경우에도, 사망의 현장이나 부검실에서 법의 의사에 의한 업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모두 상당 기간의 훈련과 경험을 요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모든 임상 의사가 사인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음은 물론, 모든 의사에게 검안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른바 변사 사건에서 부검을 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마저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불비의 수준을 넘어 자칫 사회적 안녕의 위협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음은 물론, 국가 사인 통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마저도 떨어뜨리고 있다[17].

국가가 국민의 사망에 있어 그 사인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인에 관한 국가보건 통계를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향한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에 있다. 아울러 감염병 관련 사망에 있어서는 전염경로의 확인 및 차단 등을 통한 사회안전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있다. 오늘날,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검 없이도 정확한 사인 진단이 가능해졌음에도, 여전히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부검이 단순히 사인을 판단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MOD를 결정하거나 혹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소견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3].

실무상 시체의 외표검사(검안)만을 통한 사인 판단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검안서에 담기는 사인은 불명인 경우가 많고, 의학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MOD에 대한 판단으로 가면 검안서의 신뢰성과 실무적 활용가치는 더욱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는 사망진단서에 이르러서도 비슷하여, 사인에 관한 의학적 판단이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인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가 애매하거나, MOD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다[6,7]. 또한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요양병원에서의 사망이 늘어나고 있

는 지금, 그러한 사망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회적, 제도적 관심이 필요하다. 입원 중에 경과가 확인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있을 것이나, 전신 쇠약을 보이던 중 장기 전체의 기능이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라면, 그 사망의 원인을 판단하고 기재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사인을 노쇠, 노화로 하는 것은 국가 통계목적상 바람직하지 않기도 하고,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권고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입원 중의 흡인성 질식, 침상 낙상으로 인한 두부손상, 골절로 인한 합병증의 발병과 관련한 사망에 있어서는 MOD에 대한 고민이 초래되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망은 현행법상 변사에 해당되므로, 경찰에 신고될 수밖에 없다[13]. 결국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를 망라하여 사인의 판단, MOD 판단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이들 사건을 검토하고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갖는 전문직, 전문기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18].

사법기관에 의한 검시(檢視) 행위에는 검시(檢屍)라는 의학적 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의학적 행위로서의 검시(檢屍)는 불가피하게 사법기관의 강제수사의 일부가 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고, 그로 인하여 사법부검에는 법원을 통한 영장이 절차상의 필수 요소로 굳어버렸다. 그러나 사인규명을 위한 사법기관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허가 과정에서, 판사는 그 영장을 기각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일까? 적어도 부검을 위한 영장에 있어서 그러한 판사의 권한은 법적 상식에 비추어 진정 타당한 것인가?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강제처분을 허가하지 않을 권한은 갖는다고 동의하지만,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을 허가하지 않을 권한이나 근거는 도무지 인정하기 어렵다. 저자는 어느 해 추석 명절 연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사건에 있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이 발급되지 않아 부검을 집도할 수 없었던 사례 경험이 있고, 추락사와 교통사고 사망 사이의 감별이 필요한 치매노인의 죽음에 있어서 영장이 기각되어 부검이 취소되었던 사례 경험도 있다. 심지어는 시체의 부패라는 자연현상에 의한 변화를 피하출혈로 오인한 경찰, 검찰, 혹은 유족에 의해 부검이 요청된 사례들도 있었고, 그 경우에도 아무런 전문가적 검토나 강제처분의 합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영장이 청구되고 발급되었으며, 부검전 검안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적하였음에도 이미 발급된 영장이니 법의 의사로서는 아무런 선택 수단도 없이 불필요한 강제처분을 그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도 있다. 그 반대의 경우는 훨씬 더 흔하다. 부검을 통해 병사임이 확인된 경우나 일산화탄소에 의한 사고성 중독사, 자살의 경우 등이다. 이들 죽음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의 적법성이 심각하게 의심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런 비판 없이 영장이 발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이해관계 혹은 우선순위의 갈등이나 법리상의 다툼보다는, 오히려 범죄혐의가 없는 죽음의 경우, 즉 사인규명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검에 대해서는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지양하고, 유족의 동의에 의한 부검(사인규명)을 우선시해야 하며, 유족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영장을 통한 강제처분이 시도되게 하는 제도적 전환이 바람직하다. 강제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을 중시한다고 한다[19]. 그렇다면 국가적 필요성에 의한 강제처분에 관한 사법기관의 책임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부검 거부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제3자인 법관의 판단을 통해 그 이익의 비례성을 검토하게 하여 부검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죽음의 현장과 시체를 조사하여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 및 증거 수집, 사인규명 등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싶을 것이나, 영장청구를 위한 서류를 꾸며 이를 검찰에 보고하고,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의 영장발급을 대기하고 있다가 서류가 발급되자마자 이를 부검기관에 송부하는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사건에서 어떤 경찰관은, 부검을 통해 사인이 질병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사법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사법검시위주의 후진적 검시제도가 야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눌 수 있다. 행정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작용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사법경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권력작용이라고 한다. 행정경찰은 경찰작용이기 때문에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지만, 사법경찰은 형벌권의 작용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0]. 이러한 이론적 개념은 검시업무를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법상 모든 변사는 경찰에 신고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사법기관의 입장에서 부검을 향한 관심은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 확인에만 주목하게 되므로, 정작 부검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사인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민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사인규명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는 당연히 경찰의 행정기능에 해당될 수 있는 바, 이를 행정경찰의 업무로 규정하고, 기존의 행정검시와 행정부검을 연계함으로써, 강제처분을 지양하면서도 사인규명을 위한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에 관한 법규정이나 부검을 위한 영장의 기재사항 및 발급상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듯이, 사인확인에 관한 우리의 법제도와 인적시스템은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급한 몇 가지 사항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검을 위한 영장을 포함하여 검시에 관한 업무의 근

본적인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사인규명을 요하는 모든 죽음에서의 강제처분으로서의 영장발급 관행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존의 행정검시는 대상이 제한적이면서 범위가 모호하고, 이것이 부검, 즉 행정부검으로 연결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허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행정검시와 사법검시에 있어 그 대상의 실무상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결국은 검시업무의 통합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더 나아가, 검시업무 영역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로 이어져야 하고, 여기에는 성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교통사고, 보험보상, 의료사고 등으로 연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죽음의 조사에 대한 권한을 누가 맡아야 하는가 하는 해묵은 논쟁에 도달하게 된다. 대륙법계에서는 검임검시제를 취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처럼 검사가 검시의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그로 인한 제도적 모순이나 업무처리의 비효율을 개선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진다. 나아가 사법기관의 검시 목적에, 범죄혐의만이 아닌 정확한 사인규명을 그 업무의 하나로 명시해야 한다[14].

둘째, 변사의 정의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 2018년 대한법의학회가 '변사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변사의 정의와 유형을 발표하였고[21], 경찰청이 이를 답아 2019년 '변사사건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921호)을 제정하였다. 대한법의학회는 '국민의 건강, 안전, 범죄와 관련하여 사망원인을 밝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죽음'이라고 변사를 정의하면서, 부패 및 신원불상의 시체, 평소 건강한 것으로 보였으나 갑자기 죽는 청장년 및 노인 사망,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이 아닌 영유아·소아 및 청소년 사망, 의료기관에서의 사인 미상의 사망 등 총 11가지를 검시의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경찰청은 '자연사 이외의 ...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으로 변사를 정의하면서,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화재·익사·각종 재해 등의 사고성 사망, 자살했거나 자살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망, 연행·구금 등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보건·복지·요양 관련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마약·농약·알코올 등에 의한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그밖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 등 7가지 유형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범죄혐의가 없는 죽음에서 사인규명만을 위한 부검이 최근 크게 증가하였고, 예외 없이 영장이 청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영장은 발급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형사소송법과 의료법 등 변사 관련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변사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던 죽음들을 '법의검시 대상 사망'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과 범위를 관련 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죽음은 당연히 부검을 전제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유족이 부검을 동의하지 않거나, 부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만 압수, 검증의 강제처분을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족의 부검 거부권을 인정하여 필요 시 법원에 그 권리를 청구하면 영장을 허가하

는 개념과 반대로 부검 거부의 타당성을 법원이 심리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변사’라는 용어를 버리고 ‘법의검시 대상 사망’으로 정한 후, 법의전문가에 의한 검시 결과에 따라 검찰이 관할하는 사법검시의 경로와 경찰이 담당하는 행정검시의 경로로 분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법의 사망진단서에 관한 조항을 일반진단서, 처방전 발급 조항으로부터 분리하여 독자항으로 개정하고, 사망진단서의 기재사항을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법에 적시해야 하며, 그러한 의학적 판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 시급한 것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양식을 분리하여, 사망진단과 시체검안이라는 매우 다른 성격의 업무가 같은 양식의 서류에 기재됨으로써 야기되는 업무상의 혼선과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3].

넷째, 검안 또는 부검이란, 기본적으로 의학적 행위로서 죽음을 조사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절차이고, 법의학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어떤 죽음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즉각 개입하여 범죄의 수사 혹은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다. 검시제도의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현장에 법의의사가 임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어떤 죽음에 어떤 법의학 적 조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단계에서의 법의의사의 역할에 있다. 즉, 어떤 죽음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부검이 필요한 것인지, 부검이라면 부분부검만으로 족한 것인지 완전부검을 해야 할 죽음인지, 혹은 검안만으로도 사인의 입증이 충분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죽음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한 최종 의견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때 참고할 만한 외국의 제도로는 “View and Grant”라는 것이 있다[22]. 사법기관이 부검을 요청할 때, 법의의사가 판단하여 검안만으로 사인 입증이 충분하면, 부검을 생략하고 법의의사가 시체검안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인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다섯째, 시체 검안을 통한 MOD 판단에 대한 임상 의사의 고충에도 주목해야 한다.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외인사로 판단되는 죽음, 특히 살인사건으로 판단되는 죽음에 대해서는 임상 의사에게 사망진단 혹은 시체검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죽음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의의사에게 이관하게 하는 법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연구보고에서 자살과 타살의 판단은 의사의 몫이 아니므로 이 항목을 외인사의 MOD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7]. 이는 충분히 새겨야 할 합리적인 주장이다. MOD란 사인이라는 의학적 판단에 대비하여 사망의 정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학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에도 MOD에 대한 의견을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모두 포함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 의사에 의한 MOD 판단은 병사의 여부에 그치거나, 병사와 외

인사의 구별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살과 타살, 사고사의 구분은 법의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법의학 적 증거와 함께 사망현장의 정황에 대한 수사 정보를 참고해야만 한다[23]. 따라서 실무상 MOD 결정은 죽음에 대한 법의학 적 판단을 거쳐 수사기관의 조사까지를 마친 후 수사의 최종 단계에서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MOD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ORCID: Youn Shin Kim: <https://orcid.org/0000-0001-7407-0421>; Tae Eun Kim: <https://orcid.org/0000-0002-8727-5108>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2017R1D1A3B03031691).

References

1.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 Vol. 2.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p. 23-89.
2. Jung WS.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Korean autopsy system. *Korean Soc Law Med* 2006;7:46-71.
3. Kim YS, Park MI, Park JW, et al. Defect in post-mortem examination system reviewed by the realities of death certificate issuing. *Korean J Leg Med* 2008;32:101-4.
4. Kim KS, Lim YS, Rhee JE, et al. Problems in completing a death certificate. *J Korean Soc Emerg Med* 2000;11:443-9.
5. Lee SY, Choi YS, Chung NE, et al. Inadequacies of death certification: the role of forensic pathologist. *Korean J Leg Med* 2002;26:72-9.
6. Na JI, Lee YJ, Kim HS, et al. Discrepant causes of death between medical death certificates and autopsy reports (II). *Korean J Leg Med* 2012;36:27-33.
7. Kang YS, Lee KR, Park IC, et al. Survey of the causes of death on the death certificates of DOA patients. *J Korean Soc Emerg Med* 2001;12:385-92.
8. Hanzlick R, Goodin J. Mind your manners. Part III: Individual scenario results and discussio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edical Examiners Manner of Death Questionnaire, 1995. *Am J Forensic Med Pathol* 1997;18:228-45.
9. Paik HK. Criminal procedure law. Seoul: Bakyungsa; 1985. p.

- 202-11.
10. Roh JH. Critical research on the current system of seizure and search. *Lawyers Assoc J* 2010;59:5-57.
 11. Bae JD, Hong YG. *Criminal procedure law*. Seoul: Hongmoonsa; 2018. p. 87-104.
 12. Lee SK. Developmental measures to the Korean death examining system: focused on the legal discussion on autopsy. *J Leg Stud* 2017;25:185-207.
 13. Kim YS, Kim TE. Review of legal codes governing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s and autopsy by administrative order. *Korean J Leg Med* 2019;43:1-6.
 14. Kim YS, Kim TE. Review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s governing postmortem inspection and death certification. *Korean J Leg Med* 2018;42:77-91.
 15. Kim YS. A review of warrant system for legal autopsy. *Korean J Leg Med* 2005;25:1-7.
 16. Jee WR, *Civil law*. Seoul: Hongmoonsa; 2016. p. 151-62.
 17. Koo HJ, Lee TY. The primary factors of uncertain cause of death between countries and the statistical influence of postmortem investigation system. *Korean Criminol Rev* 2011;22:173-99.
 18. Kim YS, Park JH. An experience of judicial autopsy for a death by muscular dystrophy: an autopsy case. *Korean J Leg Med* 2018;42:159-63.
 19. Lee JS. *Criminal procedure*. Seoul: Bakyounsa; 2012. p. 185-238.
 20. Kim HJ, Kim SS, Kim YH. *The new police administration*. Seoul: Bakyounsa; 2015. p. 13-28.
 21.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Unnatural death guideline [Internet]. Seoul: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2018 [cited 2020 Jan 24]. Available from: <http://www.legalmedicine.or.kr>.
 22. Ruttly GN, Duerden RM, Carter N, et al. Are coroners' necropsies necessary? A prospective study examining whether a "view and grant" system of death certification could be introduced into England and Wales. *J Clin Pathol* 2001;54:279-84.
 23. DiMaio VJ, DiMaio D. *Forensic pathology*. 2nd ed. Florida: CRC Press; 2001. p. 3-6.

Appendix 1.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반용】		○○지방법원	
영장번호		죄명	기타의 죄
피의자	성명	분상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거		
청구한 검사		번호인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다	유효기간	까지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 또는 ○○대학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부검실		
압수할 물건	○○○ 변사제 1구	작성기간(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인 경우)	
일부기각 및 기각의 취지	<input type="checkbox"/> 장소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물건 <input type="checkbox"/> 압수방법제한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20 . . . 판 사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물증사유			
처리자의 소속 관서, 관 직		처리자 서명날인	

주: 일부기각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한다.

Appendix 1. Form of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warrant. In practice, there are some misconceptions about the mentioned items for place, body, object to be searched and verified for warrant, objects to be seized for warrant, and place of execution, which are marked in boxes of red dotted line, respectively.